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6 선고 2021가단50724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담당변호사 서수민, 손태홍)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울(담당변호사 이상현)

변 론 종 결 2021. 12. 15.

판 결 선 고 2022. 2.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경기 양평군 C 임야 16,238㎡)에 관하여 2003. 7. 14. 피고 앞으로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4. 21. D,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피고를 전혀 알지 못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고 원고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물반환을 대신하여 위 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가액 상당액인 5,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무런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즉 원고는 F로부터 신발을 공급받는 대가로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하고 F에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고, F는 지인의 아들인 피고 명의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F가 신발공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반환을 요구하였고, F는 2005. 10.경 이 사건 토지 가액 에 해당하는 9,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F가 위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F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462670호)를 제기하였고, 2007. 11. 14. ‘F는 원고에게 7,8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F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양해하거나 추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설령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 주장의 손해배상채권은 D,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5. 4. 21.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때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강화석